

[별첨. 2] 임시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

1. 정관 일부의 변경 건

현재	변경 후	비고
<p>제34조 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(신설)</p>	<p>제34조 (주주총회의 결의방법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</p> <p>1. 주주총회에 의한 정관 제41조(이사의 선임) 제5항을 변경하는 경우</p>	<p>초다수결의제 도입</p>
<p>제40조 (이사의 수)</p> <p>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 및 기타 비상무이사를 둘수 있다.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. 다만, 사외이사의 경우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벤처기업 중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벤처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한다</p>	<p>제40조 (이사의 수)</p> <p>본 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 7인이하로 하며, 이중 사외이사는 4인이내, 사내이사는 3인 이내로 한다. 단, 사외이사는 전체 이사수의 과반수이상으로 한다.</p>	<p>사외이사 선임 의무화</p>
<p>제41조 (이사의 선임)</p> <p>① ~ ④ (생략)</p> <p>⑤ (신설)</p>	<p>제41조 (이사의 선임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의 선임 자격에 해당하지 못한다.</p> <p>1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p> <p>2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</p>	<p>이사 선임의 자격요건 강화</p>

현재	변경 후	비고
	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
제47조(이사회의 결의방법)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② ~ ③ (생략)	제47조(이사회의 결의방법)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사외이사 과반수로 한다. ② ~ ③ (현행과 같음)	결의요건 강화

2. 이사의 선임

가. 후보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추천인·최대주주와의 관계·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

후보자성명	생년월일	사외이사 후보자여부	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	최대주주와의 관계	추천인
최유성	1976.04.04.	여	여	-	이사회
유정우	1980.05.01	여	-	-	이사회
박정은	1981.04.14	여	-	-	이사회
총 (3) 명					

나. 후보자의 주된직업·세부경력·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

후보자성명	주된 직업	세부경력		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
		기간	내용	
최유성	공인회계사	19.04~현재	참 회계법인 이사	-
		08.01~19.03	NICE 신용평가(주) 투자평가본부 근무	
		04.10~07.12	삼일회계법인 근무	

후보자성명	주된 직업	세부경력		해당법인과 최근 3년간 거래내역
		기간	내용	
유정우	변호사, 공인회계사	23.04~현재	법무법인 웨이브 대표변호사	-
		21.10~23.04	대유위니아그룹 근무	
		18.12~21.09	세무법인/법률사무소 다현 근무	
		13.02~18.12	삼정회계법인 근무	
		06.12~09.12	삼일회계법인 근무	
박정은	변호사	23.03~현재	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	-
		16.01~현재	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	
		16.07~20.07	한국거래소 근무	
		12.04~16.04	미래에셋증권 근무	
		10.02~12.03	덴톤스리 법률사무소 근무	

다.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·부실기업 경영진 여부·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
후보자성명	체납사실 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	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최유성	-	-	-
유정우	-	-	-
박정은	-	-	-

3.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

가. 후보자의 성명·생년월일·추천인·최대주주와의 관계·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

후보자성명	생년월일	사외이사 후보자여부	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	최대주주와의 관 계	추천인
최유성	1976.04.04.	여	여	-	이사회
유정우	1980.05.01	여	-	-	이사회
박정은	1981.04.14	여	-	-	이사회
총 (3) 명					

나. 후보자의 주된직업·세부경력·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

후보자성명	주된 직업	세부경력		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
		기간	내용	
최유성	공인회계사	19.04~현재	참 회계법인 이사	-
		08.01~19.03	NICE 신용평가(주) 투자평가 본부 근무	
		04.10~07.12	삼일회계법인 근무	
유정우	변호사, 공인회계사	23.04~현재	법무법인 웨이브 대표변호 사	-
		21.10~23.04	대유위니아그룹 근무	
		18.12~21.09	세무법인/법률사무소 다현 근무	
		13.02~18.12	삼정회계법인 근무	
		06.12~09.12	삼일회계법인 근무	
박정은	변호사	23.03~현재	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파 트너변호사	-
		16.01~현재	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	
		16.07~20.07	한국거래소 근무	
		12.04~16.04	미래에셋증권 근무	
		10.02~12.03	덴톤스리 법률사무소 근무	

다.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·부실기업 경영진 여부·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
후보자성명	체납사실 여부	부실기업 경영진 여부	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
최유성	-	-	-
유정우	-	-	-
박정은	-	-	-